

 <b>교훈 : 성실</b> <b>가온중학교</b> <b>SIEUNG GAON MIDDLE SCHOOL</b>	<h1>가정통신문</h1>	<b>제 2021 - 호</b> <b>담당 : 교육혁신부</b>
	<b>시흥가온중학교 학부모회 임시총회</b> <b>안건 의결 안내</b>	<b>경기도 시흥시 장현순환로 100</b> <b>(교무실) 031-365-8200</b> <b>(행정실) 031-365-8210</b>

학부모님께!

안녕하십니까?

본교 학부모회에서는 ‘경기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 조례’ <2021.11.2.개정> 관련 학부모회 규정 개정을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코로나19 변이 발생으로 인해 감염병 확산이 우려되는바, 온라인에서 임시총회를 개최, 규정 개정 안건에 대한 가정통신문 회신 투표에 의해 의결하고자 합니다. 학부모님들께서는 붙임 자료 [학부모회 규정 신·구 대조표]를 참조하시어 (상세 내용은 학교 홈페이지 학부모회 자료실 참조) 의결사항을 아이엠스쿨 설문을 통해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교육공동체의 발전을 위하여 학부모 여러분께서 관심을 가지고 회신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일시: 2022년 1월 26일(수요일) 15:00 ~ 17:00
- 장소: 온라인(회의 주소는 총회 당일 문자발송 및 학교 홈페이지에 공지)
- 안건: 학부모회 규정 개정 건
- 의견수렴기간: 2022년 1월 20일 ~ 1월 24일 18시까지 제출
- 의견제출방법: 아이엠스쿨 설문을 통해 제출

2022년 1월 20일

시흥가온중학교 학부모회장  
시흥가온중학교장

.....<절취선>.....

2021학년도 학부모회 임시총회 개최에 따른 안건 동의 여부 회신

학생				학부모		
학년	반	번호	성명	관계	성명	서명(인)

구 분	안 건	동 의	비동의
규정 개정안	학부모회 규정 개정 사항에 동의하십니까?		
안건에 대한 의견			

시흥가온중학교 학부모회장 귀하  
시흥가온중학교장 귀하

[붙임] 시흥가온중학교 학부모회 규정 개정(안) 신 구 대조표

	개정 전	개정 후
제5조 [임원 등의 구성]	② 회장, 부회장은 총회에서 민주적 절차에 의해 선출한다.  ③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총회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2항 후단에 따른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학부모회 임원을 선출 한다.	② 회장, 부회장은 총회에서 민주적 절차에 의해 선출한다.  다만, 총회에 직접 참여하여 임원선출을 위한 투표에 참여할 수 없는 학부모는 전자적 방법으로 투표를 실시한다.
	없음	③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총회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2항 후단에 따른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학부모회 임원을 선출 한다.
제9조 [총회]	④ 총회소집은 7일 전까지에 그 회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소집안내문 발송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④ 회장은 총회를 개최하려는 경우 총회소집 의제 및 일시, 장소를 총회 개최 7일 전 까지 <u>학교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가정통신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한다.</u>
	⑤ 총회는 회원의 1/10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총회는 회원의 1/10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총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학부모는 총회 안건에 대하여 전자적 방법에 의한 투표의 방법을 통해 사전투표하여 안건에 대한 의사를 회신한다.
제12조 [대의원회 의결사항]	1. 제10조1항 총회의 의결사항 외의 학부모회 운영에 관한 사항 2. 제10조1항 총회의 의결로 대의원회에 위임한 사항 3. 임시총회 소집요구	1. 학부모회 규정 개정안 발의 2. 학년 학부모회, 기능별 학부모회 활동 보고 사항 3. 학부모회 활동 계획 및 결과 등에 관한 사항 4. 총회의 의결로 대의원회에 위임한 사항 5. 총회 준비에 관한 사항 6. 임시총회 소집요구 7. 그 밖에 대의원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
제17조 [재정지원 등]	① 학부모회의 운영과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학교의 학부모회 운영 지원비 등으로 한다.	① 학교는 <u>학부모회의 운영과 사업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하고</u> , 재정적 지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학교의 학부모회 운영 지원비 등으로 한다.